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2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의자 : 배준영 · 최수진 · 서명옥
이상휘 · 추경호 · 김위상
김석기 · 우재준 · 이현승
김승수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